



LOCATION ▶ 홈 > 뉴스 > 이민/비자

이메일 | 프린트 | 기사목록 | -가 +가 | 내 블로그에 담기

이민·비자
이민/비자
본기사에 대한 댓글
- 0 개 -

[이민 Q&A] 가족 초청으로 영주권 신속하게 받는 법 [LA중앙일보]

이동찬/변호사

기사입력: 11.23.09 20:18



△문= 부모님께서 형제자매 가족초청(I-130)을 통해 2008년 12월에 영주권 신청서(I-485)를 제출하고 올 4월에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나이가 21세가 넘어 영주권을 함께 신청하지 못했습니다. 부모님께서 영주권을 받으신 후 영주권자 21세 이상의 미혼자녀로 가족초청 청원서를 이민국에 제출하셨습니다. 영주권을 빨리 받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답= 미국 아동신분보호법은 영주권신청(I-485 또는 DS-230)을 할 수 있는 날짜 또는 가족초청 청원서(I-130)가 승인된 날짜 둘 중 늦은 날짜를 기준으로 자녀의 나이에서 가족초청 청원서가 계류되어 있었던 기간을 뺀 후 자녀가 21세 미만이면 영주권을 부모와 함께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나이에서 가족초청 청원서의 계류기간을 빼는 경우 귀하가 21세 미만이라면 귀하는 영주권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능하다면 서두르셔야 합니다. 영주권 번호가 풀린 후 1년 안에 영주권을 신청하지 않으면 아동신분보호법의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귀하의 나이를 계산했을 때 21세 이상이라면 귀하는 영주권자 21세 이상 미혼자녀의 영주권 번호가 열릴 때까지 약 8-9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다른 방법이 생길 수 있습니다. 현재 시민권자의 기혼자녀 또는 형제자매가족이 영주권을 신청할 때 나이가 21세 이상 되어 함께 영주권을 받지 못한 자녀를 위해 연방법원에서 이민국을 상대로 집단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법에 따르면 나이가 21세 이상 되어서 함께 영주권을 받지 못한 자녀들이 부모가 사용한 시민권자의 기혼자녀 또는 형제자매 청원서의 우선 순위 날짜를 나중에 접수된 영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 청원서에 사용할 수 있다고 원고측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 소송이 승소한다면 귀하께서도 영주권 신청을 곧바로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소송에서 연방지구법원은 11월10일에 이민국의 편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항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문의:(213)291-9980

- ▶부인은 왜 골프채를 들고 있었나... 우즈 미스테리
- ▶비, '닌자..' 박스 오피스 6위로 순조로운 출발
- ▶비틀즈 깜짝 변신 '무한도전' 뉴욕 논란 잠재웠다!
- ▶헉! 역대 최고 해커가 잘나가는 CEO였다니...

- ▶'흔들리는 달러' 그 이후의 세상은?
- ▶[중고물품] 61인치 TV DLP & TV 스탠드
- ▶[Ask] 합의랑 소송 중 뭐가 좋을지 조언좀...
- ▶[blog] 2010년 진짜 Working Day는 몇일?

뉴스홈으로 맨위로

이메일 | 프린트 | 기사목록 | 내 블로그에 담기

나도 한마디...!

•바른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하여 무례한 행위를 금합니다.

Empty text input field for user comments.






•감정표현: [Smiley] [Frown] [Neutral] [Angry] [Sad] [Happy] [Crying] [Wink] [Blush] [Sleep]

글올리기

HOT PHOTO

-  7년 기다렸어요
-  '너무' 섹시한 사회자
-  그렇게 노골적으로...
-  박솔미의 매력 뒤편
-  차별화된 서비스

· YELLOW PAGE [Search Box] 검색 옐로우페이지 광고상

 이민법 전문 임상우 변호사	 이민법 전문 홍은진 변호사	 스테이트 팜 알렉스 정 가든 그로브	 스테이트 팜 김 솔라 글렌데일	 스테이트 팜 헤더 정 토렌스
---	---	---	---	---

